

[별표 1]

국제구조대 재난현장 운영 및 활동기준(제5조 관련)

1. 국제구조대원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재난현장의 탐색 및 구조활동에 임하여야 한다.
2. 출동, 현장도착, 탐색·구조 등의 활동수행 시 국제기구 및 단체, 재난 당사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을 거치고, 필요시 각 단계별로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의 지침을 준용한다.
3. 국제구조대는 재난 당사국 및 현지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입국한 전문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.
4. 재난당사국의 인종·종교·문화를 존중하고, 편견이 없는 호혜적 자세로 대하여야 한다.
5.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의 요청 시, 자원 또는 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.
6. 현지 구조인력 및 외국 구조팀의 능력과 활동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.
7.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.
8. 소속 대원에 대하여 적절한 지휘·통제를 하여야 한다.
9. 탐색구조 작업은 주야 24시간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.
10. 대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출동 전 실시하여야 한다.
11. 파견 소요비용을 재난당사국 등 제 3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.
12. 음식, 물, 대원 의료처치, 숙박 등은 재난당사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.
13. 여권 등 파견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여야 한다.